

부천시도시계획(개발제한구역해제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1월 2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1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02년12월13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□ 제안이유

- 부천여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거생활 안정과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6월 28일(건교부 제2002-130호)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되었습니다.
- 본 사업지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단지로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.
- 「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(안) 수립 지침」의 III-5-나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요구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
-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, 작동 일원에 개발면적 671,871㎡(203,240평), 수용인구 14,895인, 수용세대수 4,965세대, 공공시설용지로 도로, 공원, 녹지, 학교, 주차장을 포함하는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.

□ 관련근거

- 「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(안) 수립지침」의 III-5-나의 규정
-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제1호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	의	답	변
○ 택지개발시 녹지비율이 40%이상 되어야 하고, 지구내 관통도로인 대로 3-6호선의 공사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?		○ 녹지비율,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종합검토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 하였으며 우리의 요구조건이 관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	
○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회신이 없었는가?		○ 녹지나 도로개설 둘중 하나를 택 하라고 했으나 우리 입장은 둘다 충족을 시켜달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임.	
○ 공람 공고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이 있다면,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기 바람.		○ 참고하겠습니다.	
○ 시가 건.교부에 요구한 내용이 반영된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?		○ 실무진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	
○ 유수지에 대한 부분도 토지이용계획에 입안이 되도록 하고, 대로 3-6호선등 도시기반시설의 사업비 부담문제등 중앙에 의견제출한 사항이 반영된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봄.		○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포함하여 제출하겠습니다.	
○ 의견이 반영된후 다시 의회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갖기바람.		○ 그렇게 하겠습니다.	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반대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붙임서류 : 의견서 1부.

부천시도시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해제)

결정안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제61호	안건명	부천시도시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해제)결정안에대한의견안
제출자	부천시장	의결연월일	제101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본회의(2002. 12. 24)

부천시도시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해제)결정안에 대한 의견

부천시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시한 의견중 녹지비율의 40% 이상 확보,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관통도로인 대로 3-6호선을 사업자 부담으로 서울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을 제시한 사항, 임대 아파트의 비중, 단지내 우수 조정지 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한 요구조건이 개발계획에 전체 반영된 것이 공문서상 확인되고 나서 도시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, 현 상황에서의 여월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반대임.

2002년 12월 24일

부 천 시 의 회 의 장

부천도시계획(개발제한구역해제)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

의안번호	제61호
의결연월일	2002.12.24 (제101회)

제출년월일 2002. 11. 28

제 출 자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부천여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거생활 안정과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6월 28일(건교부 제 2002-130호)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되었습니다.
- 본 사업지구는 환경친화적인 생태단지로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.
- 「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(안) 수립지침」의 Ⅲ-5-나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요구되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
□ 주요내용

-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 및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
-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, 작동 일원에 개발면적 671,871㎡(203,240평), 수용인구 14,895인, 수용세대수 4,965세대, 공공시설용지로 도로, 공원, 녹지, 학교, 주차장을 포함하는 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임.

□ 관련근거

-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(안) 수립지침」의 Ⅲ-5-나의 규정
-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

부천시도시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변경 결정(안)

□ 부천시도시계획(개발제한구역 해제)변경결정 조서

○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(km ²)	비 고
기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, 소사동, 역곡동, 춘의동, 도당동, 소사구 소사본동, 범박동, 계수동, 옥길동, 괴안동, 옥길동, 송내동, 오정구 여월동, 작동, 원종동, 오정동, 고강동, 대장동, 삼정동, 내동 	20.370	
변경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, 소사동, 역곡동, 춘의동, 도당동, 소사구 소사본동, 범박동, 계수동, 옥길동, 괴안동, 옥길동, 송내동, 오정구 여월동, 작동, 원종동, 오정동, 고강동, 대장동, 삼정동, 내동 	19.698	감0.672km ² (여월동,작동)

□ 변경사유

- 「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(안) 수립지침」의 III-5-나의 규정에 의거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, 작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.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: 자연녹지지역(개발제한구역)
- 지구내 도시계획시설 : 도로(대로2-5호선, 대로3-6호선)
- 시행자 : 대한 주택공사
- 지목별 토지 편입현황

구 분	계	전	답	임야	대지	기타
면적(m ²)	671,871	266,135	232,103	91,342	21,557	60,734
필지수	442	176	146	28	35	57
구성비(%)	100.0	39.6	34.6	13.6	3.2	9.0

- 소유자별현황

구 분	계	국,공유지	사유지	비 고
면적(m ²)	671,871	53,847	618,024	
필지수	442	51	391	
구성비(%)	100.0	8.0	92.0	

□ 기대효과

-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
-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
- 도시의 균형개발 유도

부천여월지구 전경 사진



부천시 도시계획총괄도

